

제공일자	2012. 11. 9	담당자	류건식 선임연구위원 김대환 연구위원
홍보담당	김세환 부장(3775-9051)	연락처	02-3775-9013 010-2394-6630
		총 2 매	

제목: 이혼 시 분할연금제도의 개선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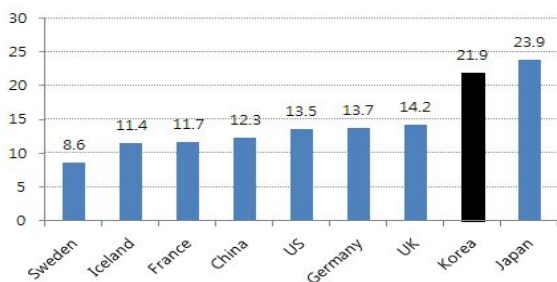
이혼이 급증하는 사회적인 추세를 반영,

분할연금제도의 체계적 개선 필요

보험연구원(원장 김대식)의 류건식 선임연구위원과 김대환 연구위원은 『이혼 시 분할연금제도의 개선방향』이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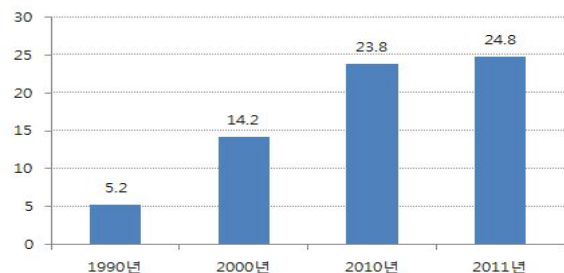
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높아 여성의 경우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. 또한 20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가진 후 이혼하는 황혼이혼의 비중이 2000년 14.2%에서 2010년 22.8%로 급증하고 있지만 남성중심 노동시장참여가 남성중심 노후준비로 연계되면서 이혼 후 분할연금제도에 대한 여성의 의존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.

<그림 1> 남성과 여성의 노동참여율 차이(%)



자료 : 통계청(2010), “사회조사”.

<그림 2> 이혼자 중 황혼이혼 비중(%)



자료 : 통계청(2012. 6), “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”.

우리나라는 1998년에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여 2007년 일부 제도개선을 하였으나 선진사례와 비교할 때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어 분할연금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.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유지한 자가 이

혼 후 60세에 도달하고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만 분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.

첫째, 현재 노령연금만 분할을 허용하고 있어 이혼 후 배우자였던 자의 상황 변화(사망, 장애)로 인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. 즉 분할연금 의무자가 사망, 장애 등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분할연금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.

둘째,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이전에 연금계정에 기록된 소득 내지 기여금은 분할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연금수급권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. 또한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판결에 의한 분할비율 조정을 인정하지 않아 분할연금의 재산권 성격이 적절히 반영되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다.

셋째,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분할연금의 수급을 허용하기 때문에 5년 미만으로 결혼생활을 한 후 이혼한 부부는 분할연금의 수급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. 또한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재혼이나 사망 시 해당 분할연금을 노령연금 수급자가 재수령할 수 없어 노령연금 수급자의 빈곤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. 이외에 국민연금 이외에 특수직역연금 및 사적연금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가 없어 연금제도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

이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과 김대환 연구위원은 이혼 시 분할연금제도의 기능 강화를 위해 “**첫째**,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이전에 연금계정에 기록된 소득 내지 기여금이 분할될 수 있도록 소득분할형태의 분할제도가 도입되고, 또한 이혼 즉시 연금 분할을 실시하여 장애·사망 등 제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이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. **둘째**,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별거 중인 부부에 대해 제한적으로 분할연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당사자 간 합의 및 법원 판결 등에 의해 연금분할 비율이 예외적으로 조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. **셋째**, 이혼이 급증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여 분할연금 수급자격에 필요한 최저 혼인기간을 5년 미만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. **넷째**, 연금제도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특수직역연금도 국민연금에 준하는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고 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, 개인연금 등과 같은 사적연금에도 분할연금 관련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”고 주장하였다.